

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#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윤재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7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3. 9. 12.

발의자 : 윤재상 · 이한구 · 조영홍  
김영분 · 안병배 · 김정현 ·  
허인환 의원 (찬성자 10인)

## 1. 제안이유

- 가. 농어촌진흥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농어촌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전문성 및 운영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성인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고
- 나. 농어업인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자조건에 대한 일부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
- 다. 그 밖에 모순된 표기와 불합리한 용어 등을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농어촌진흥기금운용관리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촉위원 대상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회 위원을 추가함(안 제7조)
- 나. 농어업인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자금의 지원한도를 상향함(안 제11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1부.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.  
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

##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인정하는 때”를 “인정하는 경우”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“(위원회의 구성)”을“(위원회의 구성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8명”을 “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호선하며”를 “선출하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유관기관 임·직원”을 “유관 기관 임직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4.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회 위원

제7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 
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 본문 중 “신청하며, 군수·구청장은 적격여부를 검토 후 적격자에 한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뒤 시장에게 제출하고,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.”를 “용자신청서를 제출한다.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·구청장은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적격자에 한정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뒤 시장에게 제출한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용자 지원신청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. 다만,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직접 접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용자금의 지원한도는”을 “용자금 중 운영자금은”으로, “지원한다.”를 “하고, 시설자금은 1농어가당 1억원 이내, 생산자단체는 3억원 이내로 한다.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제6호 중 “관계기관에 허위자료”를 “관계 기관에 거짓자료”로 한다.

제16조제2항 본문 중 “농어촌업무 담당국장으로”를 “경제수도추진본부장으로 하고, 분임기금운용관은 농축산유통과장으로 하며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증빙서류”를 “증명서류”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· ② (생략) ③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시금고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. ④ (생략)</p> <p>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수도 추진본부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유통과장, 수산과장,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p>1. 농어촌 업무관련 <u>유관기관</u> 임·직원</p>	<p>제6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인정하는 경우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</u>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선출하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유관 기관 임직원</u></p>

2.·3. (생략)

<신설>

④ ~ ⑥ (생략)

<신설>

제10조(대상자 선정) 용자를 지원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군수·구청장에게 신청하며, 군수·구청장은 적격여부를 검토 후 적격자에 한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뒤 시장에게 제출하고,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. 다만, 시장은 사업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직접 접수하여 용자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.

<신설>

2.·3. (현행과 같음)

4.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회  
위원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0조(대상자 선정) ①-----

-----  
-----  
----- 용자신청  
서를 제출한다. <단서 삭제>

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·구청장은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적격자에 한정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뒤 시장에게 제출한다.

<신 설>

제11조(용자조건 및 방법) ① 용자금의 지원한도는 1농어가당 5천만원 이내, 생산자단체는 2억원 이내로 지원한다.

② ~ ④ (생략)

제13조(용자금의 회수) ① 시장은 용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용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6. 관계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용자 지원신청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. 다만,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직접 접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.

제11조(용자조건 및 방법) ① 용자금 중 운영자금은 -----  
-----  
----- 하고, 시설자금은 1농어가당 1억원 이내, 생산자단체는 3억원 이내로 한다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용자금의 회수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관계 기관에 거짓자료-----  
-----  
-----

② (생략)  
제16조(회계공무원) ① (생략)

② 기금운용관은 농어촌업무 담당국장으로, 기금출납원은 농정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. 다만,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농촌지도자육성사업은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을 두며, 분임기금운용관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, 분임기금출납원은 주무담당 농촌지도사로 한다.

③ 회계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  
제16조(회계공무원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경제수도추진본부장으로 하고, 분임기금운용관은 농축산유통과장으로 하며-----  
----- . <단서 삭제>

③ -----  
----- 증명서류-----  
----- .

## 관계법령 발췌사항

관계법령	<p> <input type="checkbox"/> 지방자치법              ○ 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      </p> <p> <input type="checkbox"/>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             ○ 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      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“세부내용 별지 작성”</p>
관련조례 정비대상	
관련자료	

# 관계법령 발췌사항

## □ 지방자치법

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

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, 시·도의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시·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요인

- 재정수반요인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

## 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농어촌진흥기금운용관리위원회 위촉위원에 시 산업위원회 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과 용자대상자 선정절차 정비, 용자금을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하여 용자금의 지원 한도를 정하는 내용과
- 회계공무원을 현실에 맞도록 분임기금운용관을 신설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

## 4. 작 성 자

경제수도추진본부 농축산유통과장 이 현 용